

미국이 맺은 FTA 분석

- 칠레(2002타결), 싱가포르(2003),
호주(2004), 캐나다(1987), 멕시코(1992)-

2006. 4. 28

이준규 미주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차 례>

I. 국별 FTA의 주요 내용	1
1. 칠레	1
가. 협상의 배경 및 경위	1
나. 시장접근	1
다. 주요 협상 이슈	5
2. 싱가포르	6
가. 협상 배경 및 경위	6
나. 시장접근	7
다. 주요 협상 이슈	10
3. 미·호주 FTA 주요 내용과 특징	11
가. 협상 배경 및 경위	11
나. 시장 접근	12
다. 주요 협상 이슈	15
4. 캐나다	16
가. 협상배경 및 경위	16
나. 시장접근	16
다. 주요 협상 이슈	19
5. 멕시코	20
가. 협상 배경 및 경위	20
나. 시장접근	20
다. 주요협상 이슈	23

II. FTA 전·후의 경제적 성과	25
1. 칠레	25
가. GDP 성장률	25
나. 무역	25
다. 투자	26
2. 싱가포르	27
가. GDP 성장률	27
나. 무역	27
다. 투자	28
3. 호주	29
가. GDP 성장률	29
나. 무역	29
다. 투자	30
4. 캐나다	30
가. GDP 성장률	30
나. 무역	31
다. 투자	31
5. 멕시코	32
가. GDP 성장률	32
나. 무역	32
다. 투자	33
III. 시사점	34
1. 미·칠레 FTA로부터의 시사점	34
2. 미·싱가포르 FTA로부터의 시사점	35
3. 미·호주 FTA로부터의 시사점	36
4. 캐나다 및 멕시코 사례가 주는 시사점	38

<표 차례>

<표 1-1> 미-칠레 FTA 관세인하 일정	2
<표 1-2> 미·싱가포르 FTA에 따른 미국의 관세인하 일정	7
<표 1-3>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	17
<표 1-4> 제조업부문의 시장접근	21
<표 2-1> 칠레의 GDP 성장률	25
<표 2-2> 칠레의 미국과 FTA 발효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26
<표 2-3> 연평균 투자 증가율	26
<표 2-4> 싱가포르의 GDP 성장률	27
<표 2-5> 싱가포르의 미국과 FTA 발효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28
<표 2-6>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28
<표 2-7> 호주의 GDP 성장률	29
<표 2-8> 호주의 미국과 FTA 협상완료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29
<표 2-9>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30
<표 2-10> 캐나다의 GDP 성장률	30
<표 2-11> 캐나다의 미국과 FTA 발효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31
<표 2-12>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32
<표 2-13> 멕시코의 GDP 성장률	32
<표 2-14> 멕시코의 미국과 FTA 발효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33
<표 2-15>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33

I. 국별 FTA의 주요 내용

1. 칠레

가. 협상의 배경 및 경위

- 미-칠레 FTA 협상은 2000년 12월 개시되어 2년간 14차의 협상을 거쳐 2002년 12월 타결 ⇒ 2004년 1월 출범
 - 칠레의 이라크 전쟁 반대 등 국제정치적 이슈로 부시 대통령이 FTA 서명을 지체하면서 막판에 다소간 난항을 겪음.
- 미국은 칠레와 FTA 체결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 가속화 기대

<Box1> 미·칠레 FTA일정

- 2000년 12월 협상 개시 ▶ 2002년 12월 협상완료 ▶ 2003년 7월 미국의회 비준
▶ 2003년 8월 칠레 의회 비준 ▶ 2003년 9월 미국대통령 서명 ▶ 2004년 1월 1일 효력 발생
- 협상개시부터 협정 효력 발생까지 약 37개월 소요

나. 시장접근

(1) 제조업

- 칠레와 미국은 협정 발효 이후 예외 없이 12년 내 모든 교역품목의 관세 철폐기로 합의
 - 공산품은 10년 이내, 농산물은 12년 이내에 완전 자유화

<표 1-1> 미-칠레 FTA 관세인하 일정

(단위: 백만 달러)

칠레의 對美 수출				미국의 對칠레 수출			
구분	품목수	수출액 (2001년)	수출액 비중(%)	구분	품목수	수출액 (2001년)	수출액 비중(%)
즉시	9,721	2,756.4	87.0	즉시	5,293	2,533.5	88.5
2년후	1	246.5	7.8	3년후	6	5.0	0.2
4년후	198	6.0	0.2	4년후	310	246.6	8.6
8년후	145	17.4	0.5	8년후	152	62.8	2.2
10년후	66	0.2	0.0	12년후	94	10.4	0.5
12년후	56	141.5	4.5	총계	5,855	2,861.9	100
총계	10,187	3,168.2	100				

□ 공산품의 관세는 최장 10년에 걸쳐 예외 없이 전면 철폐

- 미국은 5단계(즉시, 2년, 4년, 8년, 10년)에 걸쳐 공산품 시장 개방. FTA 발효 즉시 수출액의 88.5%가 무관세화
- 칠레는 3단계(즉시, 4년, 8년)에 걸쳐 공산품 시장 개방. FTA 출범 즉시 수출액의 89.8%가 무관세화

□ 미국산 주요 수출품인 농업 및 건설기계, 자동차 및 그 부품,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에 대한 칠레의 관세 즉시 철폐

-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는 4년 이내 폐지하고 그간 부과대상 자동차 수 감축
 ※ 1만 5,835달러 이상의 수입차에 부과되는 85% 사치세는 4년간 동일 비율 세율로 인하여 철폐되며 기준가격도 1만 8,335달러로 상향 조정

□ 섬유·의류 관세인하

- 원산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섬유·의류제품은 즉각적으로 무세화
- 미국이나 칠레산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일정규모를 무세화하되 특별 세이프가드 인정

(2) 농업

- 94% 이상의 농산물은 4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며 이외 제품은 12년내 폐지
 - 미국은 5단계(즉시, 4년, 8년, 10년, 12년)에 걸쳐 농산물 시장 개방. FTA 발효 즉시 수출액의 84%가 무관세화
 - 칠레도 5단계(즉시, 3년, 4년, 8년, 12년)에 걸쳐 농산물 시장 개방. FTA 출범 즉시 수출액의 55.6%가 무관세화

- 주요 농산물의 관세 인하
 - 미국산 주요 수출품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대두, 밀류, 사료, 감자, 파스타, 튀긴 감자류, 시리얼, 증류주 등 음식료품의 시장개방 확대
 - 칠레는 자국의 식량 안보 등의 이유로 밀, 밀가루, 올리브유, 설탕 등에 적용해온 가격대(price band) 제도를 12년간 점진적으로 폐지
 - ※ 이 조항은 기존 칠레-EU 및 캐나다와 FTA에서는 존속

- 미국산 가금육, 밀, 올리브유, 설탕, 유제품과 칠레산 고기류, 유제품, 담배, 설탕 등 양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제 도입

-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되 제3국이 칠레시장에서 미국제품을 대체하는데 수출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응할 권리는 보존
 - 칠레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에 따른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보존

(3) 서비스업

- FTA 체결 이전 미국과 칠레의 평균 관세수준(각각 1.5%, 6%)이 낮아 상품시장의 시장접근 보다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협상의 초점이 집중
 - 그러나 칠레의 경우 이미 민영화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분야의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칠레 내에서는 서비스시장 개방이 칠레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존재

- 이에 따라 미·칠레 FTA에서 서비스시장 개방 관련 협상은 커다란 이견 없이 타결

□ 미·칠레 FTA에서 서비스협정은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접근 방식 채택

- 칠레는 WTO 등 다자간 서비스 협정에서 양허하지 않은 대부분의 분야 미국에 개방

※금융시장 개방: △보험사의 지사 설립 및 합작투자 허용 △은행 및 증권사의 지사 설립 규정 완화 △미국기업의 칠레 내에서 금융 정보 및 자문 서비스 제공 허가

※통신시장 개방: △미국 전화회사의 칠레 네트워크 연결시 차별 폐지 △미국기업의 칠레 통신네트워크 부문 차별 없이 입차 허용

□ 서비스 유보조항

- 서비스분야의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는 현행유보 조치(Annex I)와 미래유보 조치(Annex II)로 대별해 명시

※ 현행유보조치의 주요 사항은 25인 이상 노동자 고용 기업의 경우 칠레인의 최소 고용률 85% 의무, 칠레 공중파 TV의 칠레산 프로그램 상영 비율 최대 40%까지 보호 등임.

※ 미래유보조치¹⁾의 주요 사항으로는 칠레 문화산업계의 우려를 반영, 문화산업에 대한 유보조치 사항 도입이²⁾ 두드러짐.

□ 또한 미·칠레 FTA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문직 인력의 이동 보장(모드 4)

1)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무 및 이와 관련 미래 유보 분야는 문화, 교육, 어업활동, 법집행 및 교정관련 서비스, 환경 서비스, 건설서비스 등임.

2) Cultural Industries 분야에서 최혜국대우의무 미래유보:: "Chile ha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that accords differential treatment to countries under any existing or future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respect to cultural industries, such as audiovisual cooperation agreements.

다. 주요 협상 이슈

□ 투자

- 기업, 부채, 토지 사용권, 계약, 지적 재산권 등 모든 형태의 투자 보호
- 로컬 콘텐츠, 국내 생산품 일정비율 의무 사용, 최소 수출량 충족 의무 등의 투자관련 의무 요건 금지

□ 정부조달: 투명성 강화 및 뇌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협정에 명기된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조달(중앙·지방정부)의 경우 미국기업과 칠레 기업의 동등 대우하였고, 매입계획의 사전공지와 적기의 재심 등 정부 조달 절차 투명성 강화
- ※ 중앙정부 조달사업 하한금액: 상품 및 서비스 5만 6,190달러, 건설 648만 1,000달러

□ 통신

- 통신네트워크 사용자들의 비차별적인 네트워크 접근 보장과 미국기업의 칠레 통신네트워크의 비차별적인 입차 및 칠레 공급자의 통신 서비스 재판매 허용

□ 자본유출입 통제

- 칠레는 미·칠레 FTA 협상에서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 도입을 관철시킴.
- 다만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는 통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자본의 해외이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
- ※ 자본의 해외유출의 예: 외국인직접투자(FDI) 이윤 및 자본의 송금, 민간 및 공공외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불, 민간 및 공공기관의 해외발행 채권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불

□ 분쟁 해결

- 노동과 환경을 포함한 FTA 협정의 핵심의무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와 공동 행동 강조하고 투명성 보장하였으며, 협정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범칙금 조항 도입

□ 노동 및 환경

- 미-칠레 FTA에서는 처음으로 노동 및 환경이슈가 별도의 장으로 규정
- 미-칠레 FTA는 2002년 미무역진흥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에 명시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협정 전문에 환경 및 노동권 보호 명시

2. 싱가포르

가. 협상 배경 및 경위

□ 미·싱 FTA는 지난 2000년 11월 협상이 개시되어 2003년 1월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4년 1월 발효함.

-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hub and spoke) 구축과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이 싱가포르의 국제중계무역·금융 센터로서의 위상 강화 전략과 상호 맞물려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미·싱 FTA는 특히 양국간 무역자유화 이외에 규제개혁과 투명성 증진 등에서의 본보기로서 미국이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체결하는 FTA의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³⁾

3) 즉, 동 FTA에서는 서비스, 지적권, 정부조달, 투자보호, 노동·환경법 시행,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미국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였으며, 형사처벌 등으로 지적권, 전자서비스 및 기업비밀 보호는 여타 협정보다 더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동 협정에서 양국은 NAFTA와 달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미국이 FTA 협상에서 자국에 민감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드러냄.

<Box 2> 미국-싱가포르 FTA 추진 일정

- 2000년 11월 16일 협상 착수 ▶ 2003년 1월 15일 협상 타결 ▶ 2003년 9월 3일 대통령 서명 ▶ 2004년 1월 1일 협상 발효
- 협상개시에서 발효까지 약 37개월 소요

나. 시장접근

(1) 제조업

- 미국은 싱가포르산 수입품의 약 9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은 민감도에 따라 4년, 8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기로 하였으며, 싱가포르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기로 함.

<표 1-2> 미·싱가포르 FTA에 따른 미국의 관세인하 일정

부문	전자 및 IT	정밀기계	석유·화학	가공식품
FTA 이전	총품목의 56% 무세화 / 44% 관세부과	총품목의 48% 무세화 / 52% 관세부과	총품목의 26% 무세화 / 74% 관세부과	총품목의 15% 무세화 / 85% 관세부과
FTA 이후	100% 무세화	100% 무세화	100% 무세화	100% 무세화
단계 A(즉시철폐)	39%	44.7%	28.9%	45.1%
단계 B(4년 이내)	4.9%	5.1%	30.3%	15%
단계 C(8년 이내)	0.5%	1.9%	14.6%	9.3%
단계 D(10년 이내)	-	-	0.1%	1.6%
단계 E(MFN~zero)	55.6%	48%	26%	15%

주: 단계 E는 미국의 MFN 관세율이 이미 0인 품목들

자료: Tommy Koh & Chang Li Lin ed. *The U.S and Singapore FTA: Highlights and Insight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Singapore, Feb. 2004.

- 미·싱 FTA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특정 IT 제품과 의학기기(주로 WTO/ITA 무관세 품목)제품이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이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여 특혜를 제공키로 하는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를 도입한 점임.

- ISI는 미국과 싱가포르 기업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해당 IT 품목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수입 행정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면제한다는 것임.⁴⁾
- 또한 미국은 자국내 섬유산업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을 하고 있는바, 협상 방향은 자국 섬유산업의 고관세는 철폐하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남.
- 미·싱 FTA에서 미국은 방적사 기준(yarn-forward) 원산지 규정⁵⁾에 부합하는 섬유의류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미국이나 싱가포르산이 아닌 방적사, 섬유, 직물을 포함하는 섬유의류는 연간 제한된 수량에 대해 무세화하기로 함⁶⁾.

(2) 농업

- 미국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농업부문은 별도의 농업 section 없이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부문에서 다루고 있음.⁷⁾ 이는 미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와의 FTA에서는 별도의 section을 두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FTA에서는 상품분야에서 함께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업부문 양허안
 -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미국과의 FTA 발효 이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음.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에도 종전대로 계속해서 무관세가 적용됨.

4) 그러나 동 조항은 미국 의회의 비준과정에서 FTA 비당사국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향후 FTA에서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방적사 기준(yarn forward) 원산지 규정은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의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임.

6) 미·싱 FTA에서는 일정 쿼터의 물품에 한해 방적사 기준 원산지 규정을 면제해 주는 Trade Preference Level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싱가포르측 제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물량, 종류 및 기간에 있어 제한이 있고,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임.

7) 미국-호주 FTA나 NAFTA의 경우 농업부분이 별도의 section으로 규정된 것과는 차별됨.

※ 다만,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던 맥주(2203.00.10, 2203.00.90)와 증류주(2208.90.10, 2208.90.20, 2208.90.30, 2208.90.40)의 경우는 협정발효 즉시 관세가 완전 철폐됨.

- 미국은 싱가포르와 같이 농산물 모든 품목이 무관세나 협정발효 즉시 완전철폐가 아니라 일부 민감한 품목은 이행기간을 두어 관세를 점진적으로(4년, 8년, 10년) 철폐하도록 하였음.

※ 특히 미국의 최대 민감품목인 쇠고기, 낙농제품(치즈, 분유, 버터 등), 땅콩, 설탕, 면화, 담배 등은 관세할당(TRQ)을 적용하고 10년차부터 철폐하도록 하였음.

(3) 서비스업

□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

- 미국과 싱가포르 양국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내국민대우 원칙 및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되고, 양국은 서비스 전 부문에 걸친 시장접근보장에 합의함.

□ 금융서비스⁸⁾

- 싱가포르는 외국 은행의 지사 설립(ATM설치 포함)과 금융 업무를 제한했었으나, 미국과의 FTA에서는 소매 은행부문의 규제를 완화함⁹⁾.

※ 발효후 18개월 내에 신규은행 인가에 대한 규제 철폐되고, 미국 보험사의 자회사, 지점 혹은 합작회사 설립 승인.

□ 법률 서비스 개방

- 미국 법인이 단독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

8) 싱가포르는 서비스 분야 중 금융 분야 개방수준이 특히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미국과의 FTA에서 개방수준 강화

9) 미국 은행법인의 자회사는 발효 2.5년 후, 미국 은행 지점들은 4년 후에 ATM 네트워크를 상용화하도록 허가함.

하지 않으나 합작투자로 법무법인을 설립 허용하였고, 미국의 특정 법대 (4개) 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bar) 응시 자격을 허용

□ 인력이동(모드 4)

- 미국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싱가포르 국민 연간 5,400명의 임시 입국을 허용하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싱가포르 국민은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받지 않고 90일까지 체류 가능

다. 주요 협상 이슈

□ 미·싱 FTA에서 양국은 전자상거래 이용¹⁰⁾에 대한 장벽철폐에 합의하였고, 전자상거래 관련 의무 조항을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도입

- 양국은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전자형태로 배송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원칙과 관세 부과 금지합의. DVD 등의 형태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 관세는 DVD 디스크 등 그 내용이 아닌 매개체 가격으로 과세키로 함.

□ 경쟁정책 부문

- 미국은 싱가포르의 공공부문 비중이 비대한 점,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이 지대하나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기업을 규율하는 조항을 포함
- 구체적으로는 정부소유 지분을 점진적으로 매각해 나간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민영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민영화의 경우 미국 사업자의 참여를 차별적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미국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10) 미·싱 FTA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졌음.

- 지적재산권중 특허권부문에서 양국은 공중질서 또는 도덕성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바이오 발명품을 포함한 모든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고수
 - 의약품의 경우 특허권 신청일 대신 판매 허가일로부터 5년간 데이터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판매허가 절차상 행정적 지연이 있을 경우 보호기간 연장
- 특허: 미국 관행과 일치토록 하며, 행정상 시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 상품 인증의 목적을 위해 정부에 제출되는 테스트 자료와 무역자료는 의약품에 관해서는 5년간, 그리고 농업 화학물에 있어서는 10년간의 유출 보호

3. 미·호주 FTA 주요 내용과 특징

가. 협상 배경 및 경위

-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건설장비 등 제조업제품의 대호주 수출 증가, 호주는 농산물 시장 접근확대 위해 FTA 추진 희망
- 미·호주 FTA는 경제적 중요성 외에도 양국간의 우방관계를 공고히 하고, 9/11 이후 대테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동맹의 강화라는 외교안보적 목적 배경
- 미·호주 FTA는 1992년 미국이 제안한 후, 10년이 넘게 진전이 없었으나, 2003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2004년 2월 8일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에서 호주가 미국의 농축산물시장 보호를 수용하고, 미국이 호주의 의약품 분야 및 방송컨텐츠쿼터보호 요구를 수용하는 빅딜을 통해 FTA를 타결

<Box 3> 미·호주 FTA 일정

- 2003년 3월 협상 개시 ▶ 2004년 2월 8일 협상완료 ▶ 2004년 7월 미국의회 비준 ▶ 2004년 8월 미국대통령 서명 ▶ 2005년 1월 1일 효력 발생
- 협상개시부터 협정 효력 발생까지 약 21개월 소요

나. 시장 접근

(1) 제조업

- 미국의 대호주 수출품의 93%를 차지하는 제조업 품목의 99%에 대해 협정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함.
- 호주의 대미 수출 제조업 품목¹¹⁾의 97%에 대해 협정발효일로부터 무관세 수출 가능. 호주 상품에 대한 관세의 완전철폐 이행기간은 최대 2015년까지임.

<Box 4> 호주의 제조업 제품 대미 무관세 수출

- 운송장비 및 자동차 관련 제품 중심으로 관세 철폐
- 소형 상업용 차량: 25% 관세 철폐, 미국 승합차 시장 전면 개방,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선박수리 및 유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50%관세 철폐

- 섬유 및 의복에 대한 관세는 협정상 방적사(yawn forward)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이 협정 발효 후 최대 15년간 임.
- 양국은 불공정 무역 및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2003년 58억 호주 달러 규모.

(2) 농업

- 호주는 전농산물 수입 품목에 대해 FTA협정 발효 즉시 관세 철폐
- 미국은 농축산물 수입품중 66%의 농산품(양고기, 원예작물)에 대해 협정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4년 이내에 추가로 9%의 농산품도 관세를 철폐하여, 협정발효 이후 4년 이내 총 75%의 호주 농산물 수출품이 무관세 혜택
- 미국의 경우, 설탕을 제외한(FTA협상에서 제외) 나머지 품목의 관세 철폐 이행기간은 최대 18년임. 대미수출의 38%(16억 달러)에 해당하는 최대 수출품인 호주산 쇠고기는 미국 연간 쇠고기 생산의 0.17% 또는 수입의 1.6%이하로 제한하고, 쿼터는 18년에 걸쳐 18.5% 확대한 다음 관세 및 쿼터를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고, 미국은 호주산 농축산물수입에 대해 세이프 가드 발동 가능.
- 협상의 주요 이슈중 하나였던 미국의 설탕 시장 개방은 호주에 대한 현행 쿼터 연간 87,000 톤을 유지하는 선에서 호주가 양보. 미국 정부는 설탕업계의 강한 로비를 받아들여 예외 없는 전면개방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자유무역협정을 호주와 체결 (선례남김)
- 설탕, 쌀, 밀, 보리 판매를 위한 호주의 싱글 데스크 제도(single desk arrangement)¹²⁾와 식품 위생 및 검역제도를 현행 대로 유지

(3) 서비스업

□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

- 미국과 호주 양국 서비스공급업자들에게 내국민대우 원칙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이 적용되고, 서비스 전부문에 걸친 시장 접근 보장에 합의함.
- 미국은 호주의 통신시장, 금융시장(은행, 보험 및 재보험 시장, 증권

12) 설탕, 밀 등 특정 농산물 판매 및 수출 창구를 단일화 하는 호주의 독특한 마케팅 제도로 법적으로 설립된 작물별 마케팅 기관이 국내 판매 및 수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함.

시장), 유통시장, 특송,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오디오비주얼 및 오락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여행서비스, 광고 서비스, 기업서비스(건축, 엔지니어, 회계 등), 환경 서비스, 교육 및 훈련 서비스¹³⁾ 등 부속서의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전분야에 걸쳐 시장 접근을 확보

<Box 5> 양국간 오디오비주얼 서비스 시장개방

- 호주는 현행 공중파 방송에서의 55% 방송콘텐츠쿼터제도 유지. 미국은 호주의 현행스크린쿼터를 인정하는 대가로 미국산 영화와 음악 등의 지식재산권 강화 및 케이블, 위성 및 인터넷을 통한 미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호주 방송시장 접근을 획득하여 서비스 시장의 신규상품(new services product)을 통한 시장 진입의 기회를 확보
- 미국은 호주의 문화산업 우려 인정과 미국 오디오비주얼 서비스 산업의 미래 시장접근 확대라는 기대를 모두 충족한 균형 잡힌(balance) 협상 결과로 평가

- 네가티브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은 오디오비주얼산업, 컴퓨터 관련 산업, 금융산업 등과 같이 신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시장에 진입하는 하이테크 산업에 중요한 의미

□ 국경간 서비스 공급 및 자연인의 이동

- 미국과 호주 양국은 이미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사,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형태로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을 이미 허용하고 있었으나, FTA를 통해 **상업적 주재(모드3)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로운 국경간 공급(cross-border trade) 허용
-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관련 예외 규정, 비적합성 조치, 투명성, 금융감독 등의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위원회” 수립
- 모드4(자연인의 이동)인 기업인의 일시적 입국에 관한 조항은 미·호주 FTA에 포함되지 않았음(미·칠레 FTA와 다른 경우).

13) 초등학교 교육은 제외.

다. 주요 협상 이슈

□ 의약품 이슈: 호주의 의료 보험비용 상승 가능성 논란

- 양국 FTA 시 미국 측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인 이슈로 양국 협정시 독립적인 부속서를 둘 정도로 최대 현안 중 하나였고, 미·호주 FTA는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유일하게 의약품의 가격책정(pricing) 및 배상(reimbursement) 관련 내용을 규정

※특히 양국 협정문 부속서는 배상 가능한 의약품의 목록기재(listing)와 약품의 가격 책정(pricing)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기

□ 호주의 방송콘텐츠쿼터 이슈

- 양국간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호주의 방송산업¹⁴⁾에 대한 콘텐츠쿼터 제도 폐지 여부였고, 호주는 FTA협상 결과 호주산 방송의 55% 쿼터 유지를 확보

□ 투자 이슈

- 8억 호주 달러 이상의 대호주 직접투자의 경우만 “호주투자검토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도록 자유화 하였으나, 언론, 통신, 운송, 국방관련 부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채굴업, 핵시설 운영에 관한 투자의 경우는 5천만 호주 달러 이상의 경우 계속해서 투자심사절차를 밟아야 함.

14) 호주는 공중파 TV, Subscription TV, 라디오 방송등에 시장제약을 두고 있음. 예로 방송프로그램의 55%는 호주산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며, 공중파 방송 광고는 80%를 유지해야 함.

4. 캐나다

가. 협상배경 및 경위

- 1986년 9월부터 지속된 UR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개발도상국들의 반발 등으로 진행이 느려지자 UR협상과는 별도의 미국 주도로 지역무역협상이 추진되었고 1987년 협상타결
- 미국은 북미지역에서 규모의 경제달성과 생산의 전문화를 통해 경제회복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와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캐나다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였음.

나. 시장접근

(1) 제조업

- 미국-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CUSFTA)은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의 철폐를 상정한 것으로 품목에 따라 3가지 서로 다른 철폐시한이 적용
- 미국·캐나다 자동차 협약¹⁵⁾(1965년) 체결로 인해 양국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자동차 생산라인 및 시장에서 통합이 심화되고 있었음.
 - 협상단계에서 미국은 캐나다에 소재한 제 3국(일본, 독일계 기업) 자동차 회사의 수출에 대한 관세감면을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캐나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CUSFTA 발효이후 점진적으로 폐지함.
 - CUSFTA는 최종 자동차 관련 재화가 무관세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제조비용이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발생해야만 한다는

15) 미국·캐나다 자동차 협약에 의하면 캐나다기업들은 유럽과 일본의 수출기업이 특정한 생산과 판매비용을 충족하고 캐나다 자회사를 통해 부가가치기준을 넘기만 하면 유럽이나 일본으로부터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해서 미국시장에서 무관세로 판매할 수 있는 특혜가 있었음.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여 1965년 미·캐나다간 자동차협약보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였음.

(2) 농산물시장

□ 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수출용 곡물 및 유지종자에 대해 캐나다의 철도운송보조와 같은 수출보조금 및 국내지원 등이었음.

- 캐나다정부는 (i)농산물시장 개방, (ii) 시장의 안정적 확보, (iii) 캐나다 농업정책의 유지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협상에 임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역자유화조치, 분쟁조정에 근거한 농산물 시장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내용을 FTA에 포함시켰음.

<표 1-3>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

관세철폐	해당품목
즉시	컴퓨터, 돈육, 미가공어류, 모피, 가죽, 위스키, 미가공우라늄, 자동판매기, 제지기계, 스키, 스케이트, 오토바이 등
5년내 (매년 20%씩 인하)	지하철 차량, 종이 및 종이 제품, 가구 인쇄물, 화학제품(단약품 및 화장품제외), 페인트, 자동차 보수용부품, 기계 등
10년내 (매년 10%씩 인하)	농산물, 철강, 섬유, 타이어, 의류, 합판 등

자료: CUSFTA 전문 분석.

(3) 서비스시장

□ 양국정부는 부칙 1408의 리스트에 열거된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적용하는 **포지티브시스템**에 합의를 함.

- 부칙 1408에서 열거된 서비스는 농업 및 임업서비스, 광업서비스, 건설서비스, 유통교역서비스, 보험 및 부동산서비스, 상업서비스, 컴퓨터서비스, 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고도서비스, 관광서비스 등이 있음.

□ 한편 CUSFTA 협정문에는 금융서비스를 제5부 제17장에서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으며, 양국은 은행의 상호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였음.

- 캐나다 금융양허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캐나다 국민이 소유하는 금융기관에 관계된 외국인소유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미국의 기업 및 투자가에 대해서 캐나다 연방정부규칙의 「10/25」 일부규정의 적용을 면제하였는데, 이는 캐나다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적용하는 것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 면제됨을 의미함.

※ 이 규칙은 캐나다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캐나다국민에 지배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있어서, 한사람의 비거주자가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 또는 모든 비거주자가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함.

□ 캐나다는 문화적 기반을 이루는 요소들이 미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문화사업 예외규정을 관철¹⁶⁾

<Box 6> 문화산업 예외규정의 주요 내용

□ 1989년 발효된 캐나다-미국 FTA 협정문 2005조와 2012조에는 캐나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문화산업을 자유무역 의무로부터 제외한다는 규정과 적용대상이 되는 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NA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었음.

- 예외조항에 따르면 캐나다문화의 동질성 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출판, 영화,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는 자유무역 대상에서 예외로 다루고 있음.

□ 대신에 미국은 FTA 협정문에 캐나다가 미국 영화, 방송, 음반, 출판 산업에 대해서 차별을 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모든 적절한 방안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세부사항을 추가하였음.

16) 캐나다는 스크린쿼터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국내정서를 반영하여 문화적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캐나다의 입장이 대립을 보임에 따라 미국·캐나다 FTA 협상은 난항을 겪었으나, 미국이 캐나다의 예외조항을 수용함에 따라 타결되었음.

다. 주요 협상 이슈

□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수용하여 HS관세분류방식에 따라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가공된 상품은 미국 또는 캐나다산으로 인정
- 다만 자동차, 구두, 화학제품, 고무, 플라스틱 제품, 가구 등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직접제조비용의 50%이상이 미국 또는 캐나다 내에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음.

□ 수량규제

- GATT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모든 수량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여 미국산 중고자동차와 중고비행기 등에 대한 캐나다의 규제와 캐나다산 우라늄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철폐됨.

□ 정부조달

- 양국은 2만 5천 달러 이상의 양국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GATT 협정에서의 단일건 발주 하한금액(13만 SDR)을 2만 5천 달러로 크게 낮춤.

5. 멕시코

가. 협상 배경 및 경위

- 미국은 NAFTA를 통해 ① 자국 기업들의 대멕시코 수출기회를 확대, ② 불법이민, 마약, 환경보호, ③ 중미의 갈등 문제들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멕시코는 NAFTA를 80년도 초부터 계속되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타개책으로 삼음.

<Box 7> 추진 일정

- 1991.2.5: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국 정상들이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개시를 공식발표 ▶ 1992.12: 3국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서명 ▶ 1994.1: 발효

나. 시장접근

(1) 제조업

- 컴퓨터와 자동차의 관세는 협정발표 즉시, 기타 상품에 관해서는 5년, 10년 및 1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
 - NAFTA 회원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부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특정 예외 부문은 계속 검토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음.
- NAFTA협정에서는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를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컴퓨터에 관한 수입관세만 공동관세를 설정하고 있음.

<표 1-4> 제조업부문의 시장접근

품 목	합의 사항
자 동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는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NAFTA발효와 동시에 20%에서 10%로 인하, 이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 • 소형트럭에 대한 관세는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기타 역내국에 부과하고 있는 가정용과 산업용 전자제품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NAFTA발효와 동시에 즉각 철폐. • 전자부품의 경우에는 스위치류와 고정축전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의 수입관세를 철폐.
섬유 ·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멕시코에서 수입한 기타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량제한을 10년간 3단계에 걸쳐 폐지하기로 함. •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미국-멕시코산에 교역되는 모든 섬유 및 직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관세가 폐지됨.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섬유 중 약 17%와 의류중 30%가 NAFTA 시행 첫해에 무관세 대상에 포함됨.

(2) 농산물

- 대부분의 농산품의 관세는 즉시 폐지되었으나, 특정 품목들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됨.
- 현재 미국-멕시코 간에 농산품 중 거의 절반이 무관세 대우를 받고 있음.
 - 나머지 농산품은 대부분 10년, 민감한 품목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
 - ※ 증가된 무역의 최대 수혜자는 멕시코의 과일 · 채소 생산자와 미국의 곡물 생산자
- 국내 보조금의 경우는 GATT상의 의무 내에서 보조금 구조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수출 보조금의 경우는 불인정

(3) 서비스

□ NAFTA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한 모든 부문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

- 즉, 모든 서비스부문이 기본적인 개방 룰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 아래 개방범위에 유보를 두고자 하는 부문 명시

□ 핵심규정

- 내국민대우라는 기본의무는 북미전역에서 활동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확대·적용되고, 각 회원국은 북미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MFN 대우를 확대할 의무
- 또한 일반적으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어느 한 회원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당해 회원국 내에 사무소 또는 기타 주재원을 설립·유지·거주 등을 강요받지 않음.

□ 전문직의 면허 및 증명

- NAFTA에는 면허 및 증명의 상호인정에 관한 메카니즘이 규정되어 있고,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보유하는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 면허 및 증명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통신

- 가치가 부가된 국제 및 국내 공공 통신망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NAFTA 발효일로부터 북미 전역에 걸쳐 보장하고, 기술적인 상품 표준을 위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통신서비스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간주

□ 금융서비스

- 공급방식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다른 회원국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할 수 있으며, 어느 한 회원국이 유보하지 않는 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제한조치를 취하지 못함.
- 각 회원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시장의 진입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공개해야 하고, 각 회원국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조치를 유지할 수 있음(예: 국제수지상의 위기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 서비스 부문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예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각 회원국은 치안 및 사회 안전 서비스, 통신 서비스 공급, 법률 서비스, 그리고 해양 서비스에 대해 유보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 주요협상 이슈

□ NAFTA 내에는 분쟁해결기구로써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있으며 정책결정은 합의(consensus)가 원칙임.

- 또한, 별도로 사무국(Secretariat)을 설치하고 자유무역위원회 및 패널과 소위원회 그리고 분쟁해결 패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함.

□ 노동부문 협력에 관한 합의

- 각국의 각료급 노동관리를 장으로 노동협력위원회(Commission on Labor Cooperation; CLC)를 구성
- ※ 동위원회는 직업병, 안전, 유아노동, 노동자의 이익, 최저임금, 노사문제,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관한 입법, 노사분규 해결 등 광범한 명령권을 보유

□ 환경부문 협력에 관한 합의

- NAFTA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조항으로 ① 위생조치 및 식물 위생조치, ② 표준관련조치, ③ 분쟁해결, ④ 국제환경협정 내에서의 무역조치의 보존, ⑤ 환경에 민감한 투자조치 등 다섯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
- 각국의 환경분야 최고위 관리가 참여하는 환경협력위원회(Commissio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C)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대정부 환경관련 청원권과 환경법 및 환경규제 제정과정의 투명성 규정하였고, 상대국의 환경보호법 제정에 대한 분쟁조정회의 제소 가능

□ 수입이 급증한 경우 고용을 비롯한 경제적인 제요인을 조사할 새로운 협의위원회를 창설하였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허용

- ※ 특정산업의 고용감소가 일어나면 당사국은 동위원회에 협의나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II. FTA 전 · 후의 경제적 성과

1. 칠레

가. GDP 성장률

미국과 FTA 발효 이전기간(1993년~2003년)과 발효 이후기간(2004년)을 비교하면, 명목·실질 GDP 모두에서 FTA 발효 이후기간이 더 높은 연평균 GDP 성장률 시현

- 그러나 칠레의 경우 FTA가 발효된 이후의 자료가 2004년의 자료만 존재하므로 향후 추이 주목 필요

<표 2-1> 칠레의 GDP 성장률

(단위: %)

명목 GDP		실질 GDP	
이 전	이 후	이 전	이 후
4.93	28.29	5.71	6.06

자료: UN(<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나. 무역

칠레 역시 대미국·대세계의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이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더 상승

산업별로 보면 FTA 발효 이후 칠레의 대미 수출품중 섬유 및 의류,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 및 동 제품 산업의 경우 큰 폭 증가

<표 2-2> 칠레의 미국과 FTA 발효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산 업	대미국				대세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농수산물	16.48	-3.16	12.85	-49.99	16.48	15.98	33.03	4.22
농수산물 1차 가공품	10.09	21.86	21.01	14.28	10.47	17.92	24.45	24.00
광산물 1차 가공품	21.88	27.07	5.29	215.86	20.43	104.27	15.29	44.66
화학제품	29.63	13.03	6.26	31.53	31.27	19.69	13.56	22.88
가죽 및 종이제품	105.84	58.90	6.19	81.37	14.04	37.24	21.84	26.37
섬유 및 의류	-5.98	114.36	0.09	4.48	0.71	25.58	15.74	26.71
비금속 광물제품	-0.90	65.02	4.13	2.46	2.03	17.62	11.23	12.06
금속 및 동 제품	-0.33	98.13	2.32	13.65	3.52	89.83	7.05	41.38
기계류	7.52	18.84	6.87	25.99	24.94	23.24	7.30	25.31
잡제품	18.55	5.42	8.13	-5.54	19.02	16.39	20.03	25.87
기타	318.00	35.87	28.01	-92.50	28.06	-57.55	-1.97	-68.28
총계	11.53	28.00	6.49	33.40	10.43	53.88	11.34	28.69

주: 이전의 기간은 1990년~2003년이며, 이후의 기간은 2004년임.

자료: UN COMTRADE(<http://unstats.un.org/unsd/comtrade/default.aspx>)

다. 투자

미국의 대칠레 투자는 FTA 발효 이후 10.61%로 급격히 증가

<표 2-3> 연평균 투자 증가율

(단위: %)

칠레 → 미국		미국 → 칠레	
FTA 이전	FTA 이후	FTA 이전	FTA 이후
-	-	6.04	10.61

주: 칠레의 대미국 투자자료 미비

자료: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http://www.bea.gov/beahome.html>)

2. 싱가포르

가. GDP 성장률

- 미국과 FTA 발효 이전기간(1993년~2003년)과 이후(2004년)를 비교하면, 명목·실질 GDP 모두에서 FTA 발효 이후기간이 더 높은 연평균 GDP 성장률 시현.

- 그러나 FTA가 발효된 이후 2004년의 자료만 존재함에 유의

<표 2-4> 싱가포르의 GDP 성장률

(단위: %)

명목 GDP		실질 GDP	
이 전	이 후	이 전	이 후
5.83	15.65	6.84	8.41

자료: UN(<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나. 무역

- 싱가포르 역시 캐나다·칠레와 동일하게 대미국·대세계의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이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기간에서 더 높음.

- 특히, 대미국의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은 약 2배 정도 증가

- 산업별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이 FTA 발효전보다 증가하였고, 특히, 대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가 FTA 발효 이전보다 높음.

<표 2-5> 싱가포르의 미국과 FTA 발효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산 업	대미국				대세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농수산물	-2.46	-1.07	0.47	3.46	-1.55	11.57	1.41	12.53
농수산물 1차 가공품	-0.05	-8.65	0.23	-5.01	1.16	19.53	2.29	9.66
광산물 1차 가공품	-4.01	81.84	25.65	-1.26	5.48	40.31	10.53	39.63
화학제품	40.43	-21.33	4.00	13.32	23.37	21.67	6.23	21.09
가죽 및 종이제품	3.90	7.92	4.04	-6.73	0.71	16.44	1.46	12.79
섬유 및 의류	0.66	-13.18	0.85	-4.11	1.20	0.58	2.14	4.27
비금속 광물제품	13.21	22.64	18.83	15.95	23.56	15.51	13.51	21.68
금속 및 동 제품	-4.34	38.91	3.51	9.27	4.11	36.44	2.74	38.52
기계류	6.98	19.03	9.46	16.90	22.14	22.96	16.90	27.16
잡 제품	-5.40	19.07	4.05	7.09	-1.26	17.26	6.66	9.54
기 타	7.28	1.55	3.03	-10.75	55.47	14.06	6.19	7.14
총 계	6.94	12.40	7.93	14.21	15.91	23.57	11.25	27.06

주: 이전의 기간은 1989년~2003년이며, 이후의 기간은 2004년임.

자료: UN COMTRADE(<http://unstats.un.org/unsd/comtrade/default.aspx>)

다. 투자

미국과 FTA 발효 이전(1990년~2003년)과 발효 이후(2004년)를 비교하면 싱가포르의 대미국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급격히 상승

미국의 대싱가포르 투자 역시 FTA 발효 이후 15.19%로 증가

<표 2-6>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싱가포르 → 미국		미국 → 싱가포르	
FTA 이전	FTA 이후	FTA 이전	FTA 이후
1.16	21.36	11.84	15.19

자료: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http://www.bea.gov/beahome.html>)

3. 호주

가. GDP 성장률

□ 미국과 FTA 협상완료¹⁷⁾ 이전기간(1993년~2003년)과 이후기간(2004년)을 비교하면, 명목은 증가, 실질 GDP는 감소

- 그러나, FTA협상 완료 이후 자료가 2004년 1년에 불과한 것에 유념

<표 2-7> 호주의 GDP 성장률

(단위: %)

명목 GDP		실질 GDP	
이 전	이 후	이 전	이 후
7.38	19.48	4.62	1.36

자료: UN(<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나. 무역

□ 대미국 수입을 제외한 대미국 수출, 대세계 수출·입 모두에서 FTA 협상완료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더 높음.

<표 2-8> 호주의 미국과 FTA 협상완료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산 업	대미국				대세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농수산물	2.85	16.54	6.61	4.81	5.52	44.90	7.12	12.95
농수산물 1차 가공품	33.57	18.02	7.20	2.07	8.52	27.16	11.50	15.18
광산물 1차 가공품	-0.73	10.35	-0.75	0.62	9.95	27.45	17.03	41.76
화학제품	30.79	1.93	8.60	6.50	16.94	20.35	11.44	21.97
가죽 및 종이제품	20.75	33.76	0.04	-2.26	6.05	17.07	3.43	15.16
섬유 및 의류	-4.84	-4.16	0.94	-2.77	-2.95	13.12	5.76	16.54
비금속 광물제품	5.97	37.22	5.18	2.86	5.87	9.67	17.75	6.73
금속 및 동 제품	0.75	54.18	7.40	3.24	3.53	23.04	8.36	27.52
기계류	20.66	4.95	7.91	4.52	18.88	9.64	11.49	22.07
잡 제품	32.00	75.61	17.01	6.95	17.31	28.57	11.59	24.70
기 타	301.11	230.05	-6.37	-3.59	271.22	218.19	-4.60	808.43
총 계	8.78	14.05	6.17	4.24	7.87	38.42	10.39	24.56

주: 이전의 기간은 1988년~2003년이며, 이후의 기간은 2004년임.

자료: UN COMTRADE(<http://unstats.un.org/unsd/comtrade/default.aspx>)

17) 호주는 협상이 2004년 2월에 완료되었고, 효력은 2005년 1월 1일로 발생하여, 2005년 통계 자료미비로 인해 효력 발생전후가 아닌 협상완료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비교.

- 산업별로 보면 대미국 수출이 수입에서 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상승한 산업이 많고, 전세계 기준은 수출·입 모두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상승한 산업 다수 존재

다. 투자

- 미국과 FTA 협상완료 이후 호주의 대미국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급격히 증가
- 호주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대호주 투자 역시 FTA 협상완료 이후 20.76%에서 84.30%로 급격히 증가

<표 2-9>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호주 → 미국		미국 → 호주	
FTA 이전	FTA 이후	FTA 이전	FTA 이후
-4.08	36.26	20.76	84.30

자료: 호주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2006.

4. 캐나다

가. GDP 성장률

- 명목·실질 GDP 모두에서 FTA 발효 이후 기간이 더 높은 연평균 GDP 성장률을 나타냄

<표 2-10> 캐나다의 GDP 성장률

(단위: %)

명목 GDP		실질 GDP	
이 전	이 후	이 전	이 후
6.86	7.84	2.90	4.09

자료: UN(<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나. 무역

- 대미국·대세계의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은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기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보면 대미국보다는 대세계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한 산업이 더 많으며, 수출보다는 수입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한 산업이 많음.

<표 2-11> 캐나다의 미국과 FTA 발효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산 업	대미국				대세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농수산물	10.87	7.48	4.17	5.36	2.88	6.24	4.37	5.77
농수산물 1차 가공품	27.73	14.40	14.90	10.08	13.84	10.76	8.15	9.70
광산물 1차 가공품	10.80	22.21	-4.54	18.17	4.43	18.86	-0.41	20.98
화학제품	16.92	15.86	11.32	10.56	9.84	15.12	9.63	13.05
가죽 및 종이제품	4.40	6.67	6.02	6.03	1.75	4.71	3.67	7.57
섬유 및 의류	33.71	12.17	12.36	2.51	21.79	10.97	3.77	6.81
비금속 광물제품	15.22	4.74	7.72	6.83	3.45	7.41	2.37	9.12
금속 및 동 제품	3.81	8.83	3.18	8.29	1.48	8.99	1.46	10.06
기계류	6.67	6.06	2.91	4.51	7.08	6.53	3.09	6.75
잡 제품	18.09	15.76	15.34	4.31	16.85	15.89	10.52	10.32
기 타	68.95	11.07	10.74	3.05	41.03	11.13	8.60	1.66
총 계	9.19	9.70	4.53	6.04	6.18	9.04	3.82	8.47

주: 이전의 기간은 1989년~1993년이며, 이후의 기간은 1994년~2004년임.

자료: UN COMTRADE(<http://unstats.un.org/unsd/comtrade/default.aspx>)

다. 투자

- 미국과 FTA 발효 이후 캐나다의 대미국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2.45%로 급격히 상승
- 미국의 대캐나다 투자 역시 FTA 발효 이후 19.18%로 급격히 증가

<표 2-12>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캐나다 → 미국		미국 → 캐나다	
FTA 이전	FTA 이후	FTA 이전	FTA 이후
12.22	22.45	0.20	19.18

자료: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http://www.bea.gov/beahome.html>)

5. 멕시코

가. GDP 성장률

- 명목·실질 GDP 모두에서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더 높은 연평균 GDP 성장률을 시현

<표 2-13> 멕시코의 GDP 성장률

(단위: %)

명목 GDP		실질 GDP	
이 전	이 후	이 전	이 후
4.27	6.07	1.75	3.05

자료: UN(<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

나. 무역

- 대미국·대세계 모두에서, 미국과 FTA 발효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은 FTA 발효 이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하락.
- 산업별로 보면 대미국·대세계 수출 모두에서, 농수산물, 농수산물 1차 가공품, 광산물 1차 가공품,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산업 등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FTA 발효 이후 상승
- 수입의 경우 농수산물, 광산물 1차 가공품 산업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FTA 발효 이후 상승

<표 2-14> 멕시코의 미국과 FTA 발효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산 업	대미국				대세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농수산물	8.37	9.32	5.88	7.47	7.32	9.05	3.23	8.43
농수산물 1차 가공품	8.75	27.92	26.82	8.70	11.54	24.69	13.65	9.42
광산물 1차 가공품	-6.54	24.25	8.06	30.58	-9.00	21.07	8.78	32.16
화학제품	66.19	17.65	58.16	17.23	30.65	17.49	46.48	18.58
가죽 및 종이제품	76.19	8.33	49.26	6.56	68.76	9.27	46.48	8.76
섬유 및 의류	140.28	26.11	100.85	9.95	87.68	23.12	74.39	10.75
비금속 광물제품	20.34	21.80	52.88	10.48	11.02	18.78	49.67	15.25
금속 및 동 제품	28.60	18.68	58.69	12.62	25.79	17.41	46.73	15.21
기계류	104.19	24.12	58.75	12.15	98.99	22.88	49.16	20.85
잡 제품	356.48	22.72	53.35	2.15	273.08	22.89	48.21	6.61
기 타	-	112.59	44.12	-9.47	21.81	61.41	44.41	-7.74
총 계	44.05	22.53	47.92	10.28	32.32	21.01	40.27	14.81

주: 이전의 기간은 1990년~1993년이며, 이후의 기간은 1994년~2004년임.

자료: UN COMTRADE(<http://unstats.un.org/unsd/comtrade/default.aspx>)

다. 투자

멕시코의 대미투자는 FTA 발효 이후(1994년~2004년) 연평균 증가율 93.62%로 급격히 증가

미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FTA 발효 이후 29.22%로 증가

<표 2-15>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멕시코 → 미국		미국 → 멕시코	
FTA 이전	FTA 이후	FTA 이전	FTA 이후
38.78	93.62	15.86	29.22

자료: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http://www.bea.gov/beahome.html>)

III. 시사점

- GDP 성장률은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 모두 FTA체결 후 상승
- 무역은 칠레의 경우 대미국·대세계 수출입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싱가포르는 대미국의 수출입이 약 2배 정도 증가, 호주·캐나다 모두 대미국·대세계 수출 증가함.
- 투자의 경우, FTA 발효후 미국의 대칠레 연평균 증가율이 2배 가까이 증가, 미국의 대호주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협상체결 후 84.30%로 급증, 캐나다는 0.20%에서 19.18%로 증가율 급증, 멕시코도 FTA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15.86%에서 29.22%로 급증

1. 미·칠레 FTA로부터의 시사점

- 서비스업 개방
 - 미·칠레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의 평균 관세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미 FTA는 상품시장의 접근확대와 함께 서비스 시장 개방 이슈 중요
- 농산물 시장접근 이행기간
 - 미국은 상대국의 농업경쟁력이 미국보다 강한 경우 자국 농업 보호 이행기간을 가능한 길게, 상대국의 농업경쟁력이 미국보다 낮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기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농후함.
 - 미·칠레 FTA에서 민감 품목인 농산물의 관세인하 기간은 최장 12년임. 그러나 이는 미·호주간 FTA 농산물 관세인하 기간 18년에 비하면 짧은 편임.

- 미국산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 칠레의 사례를 볼 때, 한미간에 자동차 관세의 즉각 철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 미·싱가포르 FTA로부터의 시사점

□ 섬유산업과 원산지 규정

-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섬유산업에서의 상당한 실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엄격한 방적사기준(yarn forward) 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업체의 기대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 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방적사 등 섬유 원부자재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적사 기준(yarn forward) 원산지 규정 완화를 통해 FTA에 따른 관세철폐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
- 따라서 우선적으로 yarn forward 원산지 규정의 완화를 추진¹⁸⁾

□ 공기업과 경쟁정책

- 미국은 미·싱 FTA경우처럼 경쟁정책 조항을 통해 한국내 공기업 독점분야의 개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기업 관련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쟁정책 조항을 기본적으로 반덤핑 규정과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 농업부문

18)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이스라엘만이 방사 기준(yarn forward) 원산지 규정 완화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전통적 우방관계를 맺고 있는데다 유대인의 미국내 로비력이 막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싱가포르에 대해 예외없이 모든 농산물을 협상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무관세 예외 품목의 관세를 협상발효 즉시 철폐한 반면, 자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관세철폐 또는 최소한의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 TRQ) 증량을 통해 보호하고 있음.

※미국은 싱가포르가 농업경쟁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민감품목은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이끌어냈음.

□ 서비스 부문

- 미국은 싱가포르에 서비스전면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여 서비스 전 부문에 걸쳐 개방이 이루어 졌고, 우리에게도 전면적인 서비스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도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3. 미·호주 FTA로부터의 시사점

□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은 FTA 성공의 필요·충분 조건

- 미·호주 FTA는 2003년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첨예한 이슈로 양측 협상이 결렬 위기에 치달았을 때 2004년 2월 8일 양국 정상간 전화 통화에서 호주가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보호를 수용하고, 미국이 호주의 의약품 및 방송 콘텐츠쿼터를 수용하는 정상간 빅딜을 통해 성공적인 FTA협상 타결을 만들어 내었음

□ 미국의 설탕산업 FTA 협상에서 제외

- 미·호주 FTA에서 미국은 설탕산업을 시장개방에서 제외, 농축산물 수입 쿼터 유지 및 18년에 걸친 시장 접근허용, 제조업 제품은 97%가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조치를 받는 등 호주로부터 많은 것을 양보 받았음.

※호주는 수출 품목인 설탕이 FTA협상에서 제외되고 쇠고기와 낙농업제품의 대미수출이 미국 전체 수요의 0.17%에 해당하는 쿼터 증가에 그쳐 협상 개시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FTA 체결

※미국의 FTA협상 예외 품목의 선례를 대미협상용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호주의 의약품 혜택제도와 방송콘텐츠쿼터 보호

- 호주는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보호를 양보하는 대신, 호주의 의약품혜택제도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방송 콘텐츠 보호를 미국으로부터 확보

□ 호주의 의약품 혜택 제도와 우리의 약가 정책

- 미·호주 FTA협상도 개시전에는 농산물, 오디오비주얼산업 개방이 주요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협상단계에서는 호주의 공공의료제도인 의약혜택제도(PBS)가 협상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이로 인해 FTA협상이 결렬 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았음.
- 미국이 요구하는 약가정책의 투명성 제고는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것임.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혁신 의약품 가격책정방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악화나 환자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 환경 및 노동

- 한국은 OECD회원국이고 대부분의 국제환경 관련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미국과의 FTA논의과정에서 환경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노동의 경우 한국은 1991년에 ILO에 가입을 하였고, 우리노동시장 보호수준이 높아 한·미 FTA에서는 노동기준의 강화문제보다는,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¹⁹⁾ 논의 예상

□ 서비스 산업 개방

- 호주는 “네가티브방식”을 채택하여 부속서에 특별히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전부문에 걸쳐 개방을 하였고, 이러한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서비스전부문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

19)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411. 우리나라 해고 및 고용의 유연성 개혁 필요 강조

4. 캐나다 및 멕시코 사례가 주는 시사점

- NAFTA출범이전 캐나다경제는 저성장세에 머물렀지만 NAFTA이후 캐나다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함.
 - 캐나다의 對세계수출과 對美수출 또한 NAFTA출범이후 수출증가율이 증가
- 멕시코의 입장에서 선진국 및 경제대국과의 경제결속 심화는 긍정적 결과 창출
 - 멕시코의 살리나스정부는 NAFTA를 국내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추진하였고, NAFTA이후 적극적인 민영화 조치 등 각종 국내 개혁 조치 단행
 - 멕시코는 NAFTA에 힘입어 1995년 폐소화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으며. 멕시코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도 많이 유치